

질 의 · 서 면 답 변 서

질 의	신 교 선 위 원	답 변	평창군수(건설과장)
회 의	제5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p>< 질의요지 ></p> <p>○ 군도15호선(황계 - 수하) 비관리청도로공사 협약서</p>			

< 답 변 >

○ 신교선위원회에서 질문하신 군도15호선 비관리청도로공사 협약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공사개요

- 노 선 명 : 군도15호선
- 사 업 량 : L = 2.46Km(B = 15m), 교량 2개소
- 사 업 비 : 5,079백만원(공사비 ⇒ 4,292백만원, 보상금 ⇒ 787백만원)
- 사업시행자 : 쌍용양회공업(주), (보상업무 ⇒ 평창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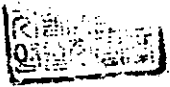
○ 추진일정

- 1992. 5. 4 : 협약체결(평창군 + 쌍용양회)
- 1992. 8.29 : 공사착공
- 1994.10.30 : 공사완공
- 1997. 7.24 : 준공검사

○ 첨부 : 협약서 1부.

協 約 書

〈郡道 347號 路線變更工事 施行〉



平 昌 郡
雙龍洋灰工業(株)

協 約 書

〈郡道 347號 路線變更區間事業施行〉

第 1 條 (目的)

郡道 347號(橫溪 ~ 水下) 路線變更區間에 대한 道路를 開設(擴張 및 鋪裝)함에 있어 平昌郡守(以下 "甲"이라 한다)와 雙龍洋灰工業(株) 代表理事 우 덕 창(以下 "乙"이라 한다)間에 履行하여야 할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 (事業施行分擔)

郡道 347號 路線變更에 따른 事業施行을 包含하여 이에 編入되는 用地買收 및 補償은 "甲"이 施行하고 工事は "乙"이 施工 完了한다.

第 3 條 (業務遂行)

1) "甲"은 다음 事項을 遂行한다

가) 郡道 347號 路線變更

나) 變更路線決定 및 設計圖書 檢討 確定

다) 工事 施工에 따른 他行政機關과의 行政 協議

라) 郡道 347號 路線變更 區間에 編入되는 用地買收 및 補償과 國公有財産의 使用 및 毀損協議

마) 編入用地的 起工承落書 徵求

2) "乙"은 다음 事項을 遂行한다

가) 路線變更區間 調查測量 및 設計

나) 編入土地의 用地圖 및 調書作成

다) 道路用地 分割測量

라) 道路施設寄附 채납書 作成

마) 路線變更 區間內 編入用地 買收費 및 補償金과 이에
所要되는 附帶費用 一切을 別途의 告知書에 依據 本 協約書가 發效 된
날로 부터 15日 以內에 納付한다.

第 4 條 (道路變更 및 路幅決定)

路線變更은 "甲"이 計劃을 樹立하여 道知事의 認可를 得한다

- 1) "乙"은 "甲"의 路線變更 計劃 樹立에 따른 事業計劃 및
圖書를 要求할時 提出한다.
- 2) "甲"은 路線變更 計劃樹立시 "乙"과 事前 協議 確定 한다.
- 3) 變更區間의 路幅은 4車線(B = 15m)으로 한다.



第 5 條 (事業施行期間)

用地買收 및 補償은 1992年度에 4車線 敷地를 買收 및 補償하고
工事は 1992年 着手 1993年度까지 2車線으로 施工하며 1994年度에 4車線
으로 完工 한다.

第 6 條 (調査測量)

"乙"은 本 路線 變更區間에 대하여 測量 및 設計를 實施 한다.

- 1) "乙"은 調査測量時 地形現況 測量 및 路線 選定後 "甲"과
協議 平面 線形 決定後 從斷 및 橫斷 測量을 實施 한다.
- 2) "乙"은 調査測量 完了後 路長 및 路幅 工法등 設計適用에
대하여 "甲"과 協議 後 設計를 着手 한다.

3) 道路의 設計는 道路의 構造 施設 基準에 關한 規程에 의하고 設計速度는 40 ~ 60Km/Hr로 한다.

4) "乙"은 設計 完了 後 設計書 및 圖面을 "甲"에게 提出하고 承認을 得한後 確定한다.(圖面 및 設計書)

5) 調查測量 設計는 1992年 6月 30日까지 完了 한다.

第 7 條 (工事施工)

"乙"은 確定된 圖書로 道路法 第34條 및 同施行令 16條 規定에 의한 非管理廳 工事 施行 許可를 得한後 1個月內에 着手하고 工事期間은 1994年 10月末까지로 하며 "乙"은 부득이한 事情으로 着工 및 工事期間의 變更을 要할시 "甲"과 協議 變更 할 수 있다.

1) "乙"은 確定된 設計圖書에 依據 工事を 誠實히 遂行 한다.

2) 工事 施工은 一般 建設業(土木, 土木建築), 特殊建設業(인공구조물공사) 免許 所有者가 施工한다.

3) "乙"은 工事 着工 15日前에 工事推進 豫定工程 計劃書를 添附하여 "甲"에게 着手届를 提出 한다

4) 工事施工은 建設部 制定 土木工事 一般 示方書 및 道路 示方書에 의한다.

5) 工事 施工中 "甲"은 工事 全般에 걸쳐 工事 監督官을 指定 수시 現場 確認 및 監督을 할 수 있고 "甲"의 指摘事項에 대하여 "乙"은 即時 是正措置 한다.



6) 工事施工 中 設計 變更事項이 發生時는 "乙"은 "甲"과 事前 協議 後 變更 施工한다.

7) "乙"은 工事 竣工과 同時 "甲"에게 竣工届을 提出하고 "甲"으로 부터 竣工 檢査를 得한다.

8) "乙"은 工事 竣工과 同時에 最終設計 圖面 및 工事 着工前 中間 및 竣工 寫眞帖 各2部를 "甲"에게 提出한다.

9) 工事 竣工後 瑕疵補修 責任期間은 3年으로 하고 瑕疵에 대하여는 豫算 會計法 第125條에 依據 瑕疵補修 保證金(總 事業費의 30/100)을 瑕疵 保證履行證券으로 대체하여 "甲"에게 納附하고 "乙"이 費用負擔 責任補修 한다.

第 8 條 (道路用地 境界 및 分割 測量)

道路用地 境界는 道路施設 境界로 한다.

1) 道路施設의 境界는 切土部는 비탈면 上端 盛土部는 비탈면 下段을 境界로 하고 構造物 區間은 構造物의 後面을 境界로 한다.

2) 道路用地 分割測量은 工事施工前 測量時 기준를 設置와 同時 實施 한다.

3) 分割測量은 "乙"이 大韓地籍公社에 의뢰 測量 한다.

4) 分割測量의 區間은 路線變更 區間으로 한다.

第 9 條 (既存道路의 措置)

郡道 347號 路線 變更 區間의 工事가 完工 된 後라도 既存道路는 江原道 所有의 道路敷地를 雙龍洋灰工業(株)로 名義 變更時까지 "甲"이 繼續 維持 管理하며 名義 變更時 自動 閉鎖하는 것으로 한다.

第 10 條 (寄附채납)

"乙"은 工事 竣工 後 1個月內에 道路施設 一切를 "甲"에게 寄附 채납 한다.

第 11 條 (費用負擔)

道路開設에 따른 費用 一切은 "乙"이 負擔한다.

第 12 條 (協約履行保證)

"甲"과 "乙"은 本 協約을 相互 誠實히 履行 하여야 하며 "乙"은 本 協約 履行을 保證하기 위하여 第6條 4項에 依據 確定 된 工事 金額의 1/10 該當하는 履行保證保險證券을 "甲"에게 提出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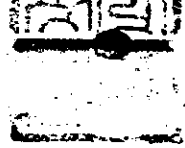
1) 履行保證保險證券의 豫置期間은 協約 체결 日로부터 工事 竣工까지의 期間에 1個月 加算한 期間으로 한다.

2) 履行保證保險證券은 工事 施行 許可를 得 한 날로부터 15日 內에 "甲"에게 提出 한다.

3) 第7條 各項 및 設計 變更등으로 工事 期間이 延長될 때는 "乙"은 履行保證保險證券을 工事期間 延長 日數를 加算한 保證保險 證券을 提出 한다.

第 13 條 (協約內容의 變更)

本 協約 內容을 變更하여야 할 不可避한 事情이 發生할때는 協約 當事者間에 協議에 의하여 이를 變更 할수 있다.



第 14 條 (解釋 등)

本 協約 内容의 解釋에 關하여 協約 當事者間 異見이 있을 때는 相互 協議하여 施行 한다.

